# |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|

## 1. 소득세법 개정 내용

#### (1)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

(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)

<개정취지> 육아휴직 지원

종 전	개 정
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·수당	□ 비과세 소득 확대
○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	○ (좌 동)
○ 공무원 또는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, 「별정 우체국법」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	
<추 가>	<ul> <li>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</li> </ul>

<적용시기> 2024.1.1.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#### (2)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

(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)

<개정취지> 출산·양육 지원

종 전	개 정
□ 근로소득·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· 보육수당	□ 비과세 한도 상향
○ (대상) 근로자(종교인)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,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 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	○ (좌 동)
○ (한도) 월 10만원	○ 월 20만원

<적용시기> 2024.1.1.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#### (3)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

(소득세법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, 제18조)

<개정취지> 기술개발 유인 제고

종 전	개 정
□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	□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
○ (대상) 종업원, 교직원,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*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*「발명진흥법」 \$2(2)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	○ 연 500만원 → 연 700만원
<신 설>	<ul> <li>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</li> <li>●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: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</li> <li>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: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*및 그와 특수 관계**에 있는 자  *법인세법 시행령 \$43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 **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</li> </ul>

<적용시기> 2024.1.1.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

#### (4)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
(소득세법 제52조 제5항·제6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)

<개정취지> 서민·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

종 전					개	정		
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		(	□ 공제한도	. 상향 및 건	적용대상 확	대		
○ (대상)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			○ (좌 동	·)				
○ (공제한	도) 300만	원~1,800민	원		○ 600만원~2,000만원			
상환	:기간 15년	이상	상환기간 10년이상		상횐	:기간 15년	이상	상환기간 10년이상
고정금리 + 비거치식	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	기타	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		고정금리 + 비거치식	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	기타	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
1,800만원	1,500만원	500만원	300만원		2,000만원	1,800만원	800만원	600만원
○ (주택요건) 기준시가 5억원 이하 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					가 6억원 이 상향 및 3	·	]전 범위 확대	
상환액 소득공제 ○ 5억원 이하 주택·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 으로 연장하는 경우			○ 5억원 억	이하 → 6억	원 이하			
<추 가>							주시 기존 장기 는 경우도 포함	

<적용시기> (공제한도) 2024.1.1.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(주택요건) 2024.1.1.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(차입금 연장) 2024.1.1.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(차입금 이전) 2024.1.1.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

#### (5)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

(소득세법 제59조의2)

<개정취지> 출산·보육부담 완화

종 전	개 정
□ 자녀세액공제	□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
○ (공제액) - 1명인 경우: 15만원 - 2명인 경우: 30만원 - 3명 이상인 경우: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	○ (공제액) - (좌 동) - 2명인 경우 : 35만원 - 3명 이상인 경우 :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 하는 1명당 연 30만원
○ (공제대상)	○ (공제대상)
<추 가>	- 손자녀

< 작용시기> (공제액 상향) 2024.1.1.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(공제대상 추가) 2024.1.1.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

## (6)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

(소득세법 제59조의4)

<개정취지> 기부 활성화 지원

종 전	개 정
□ 기부금 특별세액공제	□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
○ (공제액) - 1천만원 이하: 15% - 1천만원 초과: 30%	○ (좌 동)
<신 설>	- 3천만원 초과 : 40%(2024.12.31.까지)

<적용시기> 2024.1.1.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#### (7)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

(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5 제1항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) <개정취지> 출산·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

ح حا	حاا حاا
종 전 	개 정
□ 의료비 세액공제	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 한도 폐지
○ (대상비용)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	
<ul> <li>진찰·치료·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</li> </ul>	- (좌 동)
-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원에 지급하는 비용 (한도: 200만원)	-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(한도 : 200만원)
<추 가>	<ul> <li>장애인활동지원급여*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</li> <li>*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급자 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 서비스</li> </ul>
○ (공제율) 15%	○ (좌 동)
<ul><li>○ (공제한도)</li><li>● 본인, 65세 이상인 부양가족, 장애인 : 공제 한도 미적용</li></ul>	<b>●</b>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
❷ ① 외의 부양가족 : 700만원	② (좌 동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#### (8)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

(소득세법 제160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)

<개정취지>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

 종 전	개 정
□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	□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
○ (보관)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	○ (좌 동)
○ (제출) 총 발급 건수·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*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	<ul><li>○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</li><li>→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</li></ul>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#### (9)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)

<개정취지> 선원·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

 종 전	개 정
□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	□ 비과세 한도 확대
○ 일반 국외 근로자 : 월 100만원	○ (좌 동)
○ 외항선·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: 월 300만원	○ 월 300만원 → 월 500만원
□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	□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
○ 공무원, 「외무공무원법」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	
<추 가>	<ul> <li>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*</li> <li>*「재외한국문화원·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」(문체부 훈령) \$2(5)에 따른 "행정직원"</li> </ul>
○ 코트라, 코이카, 한국관광공사, 한국국제 보건의료재단의 직원	
<추 가>	- 산업인력공단의 직원

<적용시기> 2024.2.29.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

#### (10)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)

#### <개정취지> 과세형평 제고

종 전	개 정
□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	□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
○ 사택제공 이익 등	○ (좌 동)
○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·임차에 소요 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	
<신 설>	<ul> <li>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</li> <li>●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: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</li> <li>②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: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*에 해당하는 종업원</li> <li>*(법인령 §43⑦) 1%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</li> </ul>

<적용시기> 2024.2.29.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### (11)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)

<개정취지> 출산·보육부담 완화

~ 종 전	개 정
□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	□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
○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	
○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·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	○(좌 동)
○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	
<추 가>	○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 하는 보육비용* *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(영유아보육령 §25)

<적용시기> 2024.2.29.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### (12)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

(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)

<개정취지>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

~ 종 전	개 정
□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* *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 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	□ 사후관리 방식 변경
<ul><li>○ (추징)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 징수*</li></ul>	○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*으로 간주
* 일반계좌에서 납입되었다면 원천정수했어야 할 세액을 추정	*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 소득세(15%) 부과
○ (반환)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	○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

<적용시기> 2024.2.29.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

## (13)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

(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다목)

<개정취지>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

종 전	개 정
□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○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 제1항 각 호*에 해당하는 기부금 등 *사회복지법인, 의료법인, 종교법인 등	<ul><li>□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신탁금액의 특수관계 요건 명확화</li><li>○ (좌 동)</li></ul>
<ul> <li>○ 아래 요건(①+②+③+④)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</li> <li>①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이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기부될 것</li> <li>② 신탁설정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</li> <li>③ 금전으로 신탁할 것</li> <li>④ 위탁자가 ①의 공익법인 등과 구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제20조 제13호*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</li> <li>* 주주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설립자인 비영리법인(주주등이 비영리법인지분의 20%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)</li> </ul>	● 위탁자 등*이 ●의 공익법인 등의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(위탁자 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%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) *위탁자+위탁자와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제1조 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

## (14)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

(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)

<개정취지>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

~ 종 전	개 정
<ul> <li>□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한도</li> <li>○ (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)</li> <li>- 기준소득금액* - 이월결손금</li> <li>*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</li> </ul>	<ul><li>□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 및 순서 규정</li><li>○ 고향사랑기부금 추가</li><li>- (좌 동)</li></ul>
○ (우리사주조합기부금) - 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정치자금 기부금 - 특례기부금] × 30%	○ (우리사주조합기부금) - 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정치자금 기부금 - 고향사랑기부금 - 특례기부금] × 30%
<ul> <li>○ (일반기부금)</li> <li>- 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정치자금 기부금 - 특례기부금 - 우리사주조합기 부금] × 30%</li> <li>*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: 이월결손금 → 정치자금기부금 → 특례기부금 → 우리사주조합기부금</li> </ul>	○ (일반기부금) - 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정치자금 기부금 - 고향사랑기부금 - 특례기부금 - 우리사주조합기부금] × 30% *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: 이월결손금 → 정치자금기부금 → 고향사랑 기부금 → 특례기부금 → 우리사주조합기부금

<적용시기> 2024.1.1.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### (15)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

(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)

<개정취지>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

~ 종 전	개 정
<ul><li>특례기부금의 범위</li></ul>	□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 범위 조정
○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특례기부금	○ (좌 동)
<ul><li>특별재난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(●+②)</li></ul>	○ (좌 동)
❶ 봉사일수(=총 봉사시간÷8)×5만원 -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	<b>①</b> 5만원 → 8만원 -(좌 동)
② 자원봉사요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 류비·재료비 등 직접비용	2 (좌 동)
<단서 신설>	○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 비는 제외

<적용시기> 2024.2.29.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#### (16)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

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)

<개정취지>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

종 전	개 정
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*  *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 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	□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

<적용시기> 2024.3.1.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

## 2.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

### (1)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

(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)

<개정취지> 벤처투자 유인 제고

종 전	개 정
□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	□ 적용대상 추가
○ (적용대상) ①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③ 창업·벤처전문 PEF에 투자	○ (좌 동)
<추 가>	④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
○ (소득공제) 출자금액의 10%	○ (좌 동)
<신 설>	-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
	[출자금액×해당 조합의 벤처기업 투자비율*] ×10% *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÷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
○ (적용기한) 2025.12.31.	○ (좌 동)

<적용대상> 2024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<소득공제> 2024.2.29. 이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#### (2)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

(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)

<개정취지>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

종 전	개 정
□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	□ 적용기한 연장 대상 확대
<ul> <li>○ (대상)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</li> <li>①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(30만\$ 이상)에 따른 기술 제공자</li> <li>② 아래 요건(ⓐ+ⓑ+ⓒ+ⓓ)을 모두 충족하는 자</li> <li>③ 자연·이공·의학계 학사 이상</li> <li>⑤ 국외 대학·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연구 경력</li> <li>ⓒ 과세연도 종료일(12.31)기준 해당 기업과특수관계*가 없을 것*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\$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</li> </ul>	○ (좌 동)
<ul><li>④ 연구기관,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할 것</li></ul>	④(좌 동)
<추 가>	<ul> <li>유망 클라스터*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</li> <li>* 연구개발특구, 첨단의료복합단지</li> </ul>
○ (감면율) 10년간 50%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2023.12.31.	O 2026.12.31.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

#### (3) 외국인기술자·근로자·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, 제16조의2, 제16조의3)

<개정취지> 조세회피 방지

종 전	개 경
□ 외국인기술자·근로자·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* 적용 배제 요건  * ① (법 \$18)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② (법 \$18의2)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③ (법 \$18의3)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 득세 감면	□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근로기간 중으로 확대
○ 과세연도 종료일(12.31)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 관계*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*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§1의2에 따른 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	○ 근로기간 중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

<적용시기> 2024.2.29.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#### (4)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등

(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)

<개정취지>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

~ 종 전	개 정
<ul><li>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</li></ul>	□ 적용기간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
<ul> <li>○ (내용) 19% 단일세율*적용</li> <li>*종합소득세율(6~45%) 선택 가능</li> <li>- 비과세·감면,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 하지 않음</li> </ul>	○ (좌 동)
<신 설>	<ul> <li>○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 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*</li> <li>* 외국인근로자가 '23.12.31.까지 제공받은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(소득령 부칙)</li> </ul>
○ (적용기간)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2023.12.31.	○ 2026.12.31.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

#### (5)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

(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)

<개정취지>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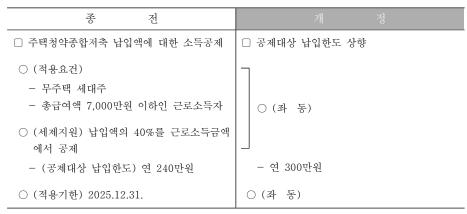
종 전	개 정
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	□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
○ (대상) 청년*·노인·장애인·경력단절여성 *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~34세로, 병역(현역병, 사회복무요원 등)이행시 그 기간(6년 한도)을 연령에서 차감	
○ (감면율) 70%(청년은 90%) ※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	
○ (감면기간) 3년(청년은 5년)	○ (좌 동)
○ (대상업종) 농어업, 제조업, 도매업, 등	
<추 가>	- 컴퓨터학원
○ (적용기한) 2023.12.31	○ 2026.12.31.

<적용시기> 2024.2.29.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### (6)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

(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)

<개정취지>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

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#### (7)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

(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,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, 96조의6)

<개정취지>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

종 전	개 정
□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	□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
○ (가입요건) 만 19~34세, 총급여액 5,000 만원(종합소득금액 3,800만원)이하	
○ (세제지원) 납입금액(연 600만원 한도)의 40% 소득공제	○ (좌 동)
○ (추징)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* 추징 * 누적 납입금액의 6%	
<단서 신설>	<ul> <li>다만,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</li> </ul>
<신 설>	<ul> <li>□ 청년형 장기펀드, 공모 부동산펀드* 전환가입 요건</li> <li>* 공모 리츠의 경우 전환가입 대상에서 제외</li> <li>① 기존 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(동일계좌 유지)에 가입</li> <li>② 기존 펀드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적격펀드에 납입</li> <li>③ 기존 펀드와 다른 적격펀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</li> </ul>
○ (적용기한) 2023.12.31.	O 2024.12.31.

<적용시기> 2024.4.1.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

### (8)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

(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, 제122조의3)

<개정취지> 서민·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

종 전	개 정
□ 월세 세액공제	□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
○ (대상) 총급여 7천만원(종합소득금액 6천 만원)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	○ 총급여 8천만원(종합소득금액 7천만원)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
○ (공제율) 월세액의 15% 또는 17%* * 총급여 5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,500 만원 이하자	○ (좌 동)
○ (공제한도) 연간 월세액 750만원	○ 750만원 → 1,000만원
○ (대상 주택) 국민주택규모(85㎡)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	○ (좌 동)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

### (9)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

(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)

<개정취지> 내수 활성화 지원

종 전	개 정
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○ (공제대상)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금액	□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신설 ○ (좌 동)
<신 설>	<ul> <li>○ '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</li> <li>• '23년 대비 5%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% 공제율 적용(공제한도: 100만원)</li> </ul>
○ (적용기한) '25.12.31.	○ (좌 동)

#### (10)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)

<개정취지> 과세형평 제고

종 전	개 정
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는 금액	□ 적용기한 연장
○ 국세, 지방세, 전기료 등	
○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	
○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	│ │ ○ (좌 동)
○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	
○ 이자상환액, 금융·보험용역 관련 수수료· 보증료 등	
<추 가>	○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
	○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·매수·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

<적용시기> 2024.2.29.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## 참고

# 2024년 귀속 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(안) (2024.12월 국회 통과되면 확정)

#### (1) 결혼세액공제 신설

(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신설)

<개정취지> 결혼비용 지원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결혼세액공제
	○ (적용대상)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
	○ (적용연도) 혼인신고를 한 해(생애 1회)
	○ (공제금액) 50만원
	○ (적용기간) '24~'26년 혼인신고 분

<적용시기> 2025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#### (2)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

(소득세법 제12조 제3호)

<개정이유> 출산·양육부담 완화

현 행	개 정 안
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	□ 비과세 한도 폐지
○ (대상)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	○ ①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 하여, ②출생일 이후 2년 이내*에, ③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(2회 이내) 받는 급여 * '24년 수당 지급시에는 '21.1.1.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

<적용시기> 2024.1.1.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#### (3)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

(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)

<개정취지> 조문 정비

현 행	개 정 안
□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	□ 나이요건 명확화
○ (대상요건) 거주자의 직계비속 ○ (나이요건) 20세 이하	○ (좌 동) ○ 20세 이하(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)

#### (4)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

(소득세법 제61조 제2항)

<개정취지>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

현 행	개 정 안
□ 세액공제>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	□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
<ul><li>○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 세액(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)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</li></ul>	○ (좌 동)
- 자녀세액공제	
- 연금계좌세액공제	
- 특별세액공제	
* 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표준세액공제	
-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	
-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	
<추 가> 	-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

<적용시기> 2025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## (5)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

(법인세법 제24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)

<개정취지>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

현 행	개 정 안
□ 특례기부금 단체	□ 특례기부금 단체 추가
<ul><li>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</li><li>○ 국립대학병원</li><li>○ 서울대학교병원</li><li>○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</li></ul>	○ (좌 동)
<추 가>	○ 특례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 하는 의료기술협력단
□ 일반기부금 단체	□ 일반기부금 단체 추가
<ul><li>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</li><li>○ 국립대학병원</li><li>○ 서울대학교병원</li></ul>	○ (좌 동)
<추 가>	○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 하는 의료기술협력단

<적용시기> (특례기부금) 2025.1.1.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(일반기부금)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